

수 신 :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제 목 :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3년 8월 25일

대표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류종우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박종필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육정미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이성오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숙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이재화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임인환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정일균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종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3.08.25.

발의의원 : 류종우, 박종필,
육정미, 이성오,
이재숙, 이재화,
임인환, 정일균,
하병문 의원
(9명)

1. 제안 이유

조례안의 목적범위와 관급공사 분리발주 책무를 지는 대구광역시장 등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관급공사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관급공사의 주체를 규정(안 제2조)

나. 관급공사 분리발주 책무의 범위를 규정(안 제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완료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의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가 분리발주하도록하여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급”란”을 ““도급”이란”으로 한다.

2. “관급공사”란 대구광역시(본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출연기관 및 산하 공사·공단이 도급인이 되어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시 산하 공사·공단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공공건축물 등 기반시설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은 관급공사에 있어서”를 “시장등은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로, “분리하여,”를 “분리하여”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대구광역시의 공공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관급공사에서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질을 향상시켜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관급공사”란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p> <p>3.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p> <p>4. 5. (생 략)</p> <p>6. “도급”란 「건설산업기본법」</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의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가 분리발주하도록 하여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 다음과 -----.</p> <p>1. (현행과 같음)</p> <p>2. “관급공사”란 대구광역시(본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출연기관 및 산하 공사·공단이 도급인이 되어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p> <p>3.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 피난구조설비 ----- -----.</p> <p>4. 5. (현행과 같음)</p> <p>6. “도급”이란 -----</p>

제2조제11호의 도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의 공공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을 충분히 확보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 분리발주) 시장은 관급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4. (생략)

제5조(분리발주 보고)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시장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시 산하 공사·공단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공공건축물 등 기반시설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적절한 품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 분리발주) 시장등은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
----- 분리하여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분리발주 보고) <삭제>

관 계 법 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③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